



기존주택 청년매입임대(수원,용인,광명,김포) 예비입주자모집공고



- 청년 매입임대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을 매입한 후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50%수준으로 임대·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 현재 기준으로 해당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분에게 공급됩니다.
- 공급신청은 주택의 호수별로 진행되며, 예비자 순번(주택의 호수별) 발표 후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공급호수의 2배수를 모집하며, 이에 따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거주중인 기존임차인의 퇴거 및 공급시행 전 실시하는 개·보수 상황에 따라 입주에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의 청약접수는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만 받습니다. 반드시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내 4개 시 소재 청년형 매입주택
- ※ 매입주택 호수별 면적 및 임대조건은 「붙임첨부」 주택내역 참조

주택명	주소지	전체 호수	공급호수	대기호수	최종선정 호수
서희스타힐스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111	6	2	2	4
한샘더랜드마크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77	26	8	8	16
소하람2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92번길 11	11	3	3	6
안강력스나인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9로 7번길 132	8	7	7	14

2.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구분	내용
임대조건	• 시중전세가격의 30%(3순위 50%)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하며, 순위별 세부주택 임대조건은 「붙임첨부」 확인바람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2년, 입주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가능 (최장 6년거주)

- 관리업무(공용부분 청소, 공과금 배분 등)를 외부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임대료 및 세대공과금 외 별도의 관리비용이 발생하며 입주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함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 추가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3. 모집일정

■ 공급일정 및 장소

내용	일정	비고
모집공고일	2020.03.27.	주택관리공단 및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신청접수	2020.04.13(월)-2020.04.17(금)	방문접수 :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우편접수 : 등기우편만 가능하며 '20.04.17 소인우편까지 유효 (주소 : 경기도 오산시 수정로 30-13, 세교프라자 401호)
주택개방	2020.04.06.(월) ~ 04.11.(토)	10:00~16:00 개방, 전기/수도 사용금지
대상자선정 및 순번발표	2020.07월(예정)	개별통보
계약체결 및 입주	순번호래시	

- 입주대상자 자격조회 등으로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입주신청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입주자격을 정확히 확인 후 작성하시기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현장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함.(모든 서류는 원본이어야 하며, 사본 불가함)

4. 입주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 현재 무주택자이며 미혼인 청년 중 아래의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청년인정기준)

- ① 대학생('20년도 입·복학예정자 포함)
- ② 취업준비생(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③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2.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고등기술학교(전공대학)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 다만,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은 제외
 - ※ 신청자는 본인의 재학중인 학교가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공사**에서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첨부 "지원가능 대학현황('20.01. 대학알리미 공시대상 참조)"

졸업, 중퇴 학교 인정 기준

[대학교 인정 기준]

1. 「고등교육법」 제2조 3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 ※ 다만, 사내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해외대학은 제외

[고등·고등기술학교 인정 기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1조의 방송통신고등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55조의 특수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
5. 고졸검정고시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동등 학력 인정자
 - ※ 다만, 중학교 졸업, 해외고등학교 졸업은 제외

5.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 순위별 입주자 자격요건

대상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유형	유형별 충족요건
	수급자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인 자
	한부모가족	본인 또는 부모가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인 자
	차상위계층 가구	본인 또는 부모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차상위계층인 자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다만,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본인과 부모의 총자산 288백만원이하, 자동차 2,468만원이하, 세대 기준)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 * 다만, 행복주택(청년) 입주자 보유 자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입주대상에서 제외 (본인기준, 총자산 237백만원이하, 자동차 2,468만원이하, 본인 기준)

※ ① 이동복지시설 퇴소예정 또는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② 청소년쉼터에서 퇴소예정 또는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여 경기도시공사에게 통보한사람)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할 경우, 위의 입주순번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동일순위내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나, 동일점수인 경우에는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함.
-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공사의 추첨방식에 따라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입주자 선정기준 및 배점기준

-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
 -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 3점
 ※ 1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
-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점
 - ※ 2순위 또는 3순위 자격 경합 시에만 적용한다.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3순위 신청이라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 부모 서명)
-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인 경우 : 2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주소변동이력 기재)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점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주소변동이력 기재)
- 장애 여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1점

소득·자산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2,645,147원	4,379,809원	5,626,897원	6,226,342원
※ 소득 산정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대상으로 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자 산	총 자산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각 순위별 총자산 보유금액 이하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자동차 가액	• 해당가구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이 각 순위별 자동차 보유금액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으로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됨
검증대상		※ 청년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동거인 신청 가능). ※ 해당 세대: 신청자, 신청자의 부모(세대 분리된 부모 모두 포함하되, 이혼시 부 또는 모에 한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함)

구분		산정방법
소득		<p>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총자산	금융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기타 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닐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3.27)**이후 발생분에 한합니다.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착오입력 및 허위신청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조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 취소나 정정은 불가하며,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대학생, 취업준비생 확인 서류(재학 및 졸업 확인 등)

유형	제출서류
대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학생) 재학증명서 • ('20년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 ('20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하고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청년 (만 19세~39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서류 없음

■ 대학생, 취업준비생 및 청년 공통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대상자 및 발급방법 등	부수
필수	청년매입입대 신청서	• 신청서 양식을 출력한 후, 본인의 해당자격을 확인하여 작성	1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사양식 확인 후, 해당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각1통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방법) 공사양식 확인 후, 해당 가구원 전원이 서명 *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자산보유사실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순위 신청시 본인 및 부모포함 작성 • 3순위 신청시 본인만 작성 	1통
	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신청자가 등분상 부모 세대분리시) 부모 모두, 부모 중 일방이 세대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부모의 등본 추가제출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반드시 제출	1통	
추가	부 또는 모 혼인관계증명서(상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이혼시에 한해 제출(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혼인관계증명서(상세)로 제출 	1통

■ 순위별 입주자 자격 요건 확인 구비서류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가구, 한부모가족 가구'로 신청시

세부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주거·의료수급자	•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7. 무주택 여부 검증 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해당세대 전원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부동산 가액에 포함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무허가건물이란?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 무허가 소명방법 :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공문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주택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회 예비자 모집공고 호별 주택모집으로 신청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생활여건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입주자가 계약체결 후 입주포기시 기입주가 이루어진 가구에 대기중인 후순번자가 우선 배정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해당주택의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신청한 호수 이외의 호수에 계약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자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입주자격 유지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최장 6년 거주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재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소득조건과 관련하여 1, 2순위 입주자가 재계약 시 3순위 자격을 유지한 경우 3순위 임대조건 적용하며, 대학생의 경우 휴학 중인 경우에도 재계약 가능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병역의무이행 이전과 이후의 합산 최대 거주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입주 후 혼인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를 7회 연장할 수 있으며 (총 9회), 소득 및 자산 등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요건을 충족하여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만료일까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릅니다.
동호 지정 계약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즉시 계약 및 입주가 되지 않으며, 입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 되는대로 기 선정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주택호 선정과 임대차계약 체결은 공가 발생 후 예비입주자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이 발송되며, 주택은 계약체결 당일 정해집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순번이 도래하였을 때 계약을 포기(계약일시에 불참 등)할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상실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u>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u>해야 합니다. • 청년매입임대 신청자가 타 임대주택(국민임대, 전세임대 등)에 세대주(계약자)로 거주중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고 매입임대주택으로 전입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신청자 본인)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주택상태 그대로 계약·입주하셔야 하며, 주택에 가전제품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는 임대목적물이 아니므로 보수나 교체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전제품 등에 하자, 망실, 고장이 있더라도 이에 대한 A/S 요청, 보수 등은 입주자가 직접 처리하셔야 하며 관련 비용을 우리공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 위해행위(사회적 문란행위, 상습음주 및 흡연, 지인 등의 잦은 방문 등)로 다른 입주자의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시 입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방문조사 요청에 대한 미협조시 입주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입주자는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임대주택법에 의한 다른 공공건설임대주택(공공분양, 공공임대아파트 등)에 신청가능하며, 이 경우 기존 매입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임대주택은 전매·전대가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함으로써 인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우리공사는 입주대기자의 주택공급을 위해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9. 문의처



■ 문의전화 : ☎ 031-378-1040 주택관리공단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 위치안내 : 경기도 오산시 수청로 30-13(내삼미동) 세교프라자 401호

2020.03.27.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서

성명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	---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E-mail	@
	부모	주소	
		전화번호	

신청유형

대학생 (대학교 학년, 재학중 휴학중)
 취업준비생(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출생일 1981.03.27. ~ 2001.03.27.)

입주자격

1순위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input type="checkbox"/> 한부모 가족 <input type="checkbox"/> 차상위계층 가구
2순위	<input type="checkbox"/>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순위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신청주택

주택	<input type="checkbox"/> 서희스타힐스(수원) <input type="checkbox"/> 한샘더랜드마크(용인) <input type="checkbox"/> 소하람2(광명) <input type="checkbox"/> 안강릭스나인(김포)
신청호수	_____호

※ 예비입주자는 순위별 입주자격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합니다.
 당첨자의 계약 및 입주포기, 퇴거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우선순위자에게 입주 기회를 부여 합니다.
 또한, 해당주택의 공가발생에 따라 신청한 호수 이외의 호수에 대해 계약안내가 진행 될 수 있습니다.

가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3점(1순위 경합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 부모 가족 : 3점(1순위 경합시)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3점(2순위 또는 3순위 경합시)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 2점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인 경우 : 2점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1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2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 1점

위와 같이 청년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공사

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귀하

☑ 첨부서류 작성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관련항목	확인사항						
공통서류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모집공고이후 발급, 모두공개로 발급)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모집공고이후 발급, 상세로 발급) <input type="checkbox"/> 청년매입임대주택 신청서 1부 (공란없이 작성, 정자서명 또는 도장날인) <input type="checkbox"/> 서약서 및 동의서 (첨부1, 2, 3, 4, 5, 정자체서명 또는 도장날인) : 신청순위별로 작성요령이 상이함						
추가서류 (입주자격)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대학생</td> <td>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재학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0년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20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 제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취업준비생</td> <td>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input type="checkbox"/>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청년</td> <td>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없음. </td> </tr> </table>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재학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0년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20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input type="checkbox"/>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청년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없음.
대학생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재학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0년 입학예정자)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확인서 * 최종 입주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추후 재학증명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20년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 및 각서(공사양식)제출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 제출)						
취업준비생	<input type="checkbox"/>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전체이력으로 발급) <input type="checkbox"/> (졸업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중퇴자)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 제적증명서 <input type="checkbox"/> ('20년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input type="checkbox"/>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청년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없음.						
추가서류 (신청순위)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5%; text-align: center;">1순위</td> <td>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순위</td> <td>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순위</td> <td>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td> </tr> </table>	1순위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순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3순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1순위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input type="checkbox"/>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장애아동수당대상자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순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부모 포함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3순위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본인 정자체서명 또는 날인)						
추가서류 (가점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생계·주거·의료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부모가 무주택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및 부모 포함 서명 • 공급대상지역 이외의 시(특별시·광역시 포함한다)·군 또는 해당 시(광역시 포함)·군 안에서 교량 등으로 연륙되지 않은 섬 지역 출신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주소변동이력 기재) •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서 사본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초본) 제출(주소변동이력 기재)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신청자 본인의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가구의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동거인의 장애인증명서 						
신청자의 부모가 신청자와 등본상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분리된 부모 모두의 등본 제출						
신청자의 부모가 이혼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 제출 * 서류 제출된 부 또는 모에 한해 입주자격검증 실시						
신청자의 부모가 실종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표등본(말소) 제출(실종신고서는 인정안됨)						

무주택 서약서

[앞면]

√ 다음의 설명을 읽어 본 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십시오.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신청자 본인이 아래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소득 및 총자산)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①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②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18.12.11)되어 개정일 이후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 ③ **(소득 및 총자산)** 세대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금액 및 총자산가액의 합이 아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 및 총자산 기준 이하임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2순위 2억 8,800만원
						3순위 2억 3,700만원
가구원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일반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구분	1인	2인	3인	4인		2,468만원
50%	1,322,574원	2,189,905원	2,813,449원	3,113,171원		
70%	1,851,603원	3,065,866원	3,938,828원	4,358,439원		
100%	2,645,147원	4,379,809원	5,626,897원	6,226,342원		

□ 소득 및 총자산 가액은 신청 순위에따라 공고문의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함

년 월 일

서약자
(계약자)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공사
위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귀하

0.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갱신계약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 ◆

- ① 상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②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첨부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경기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성명	생년월일	관계	서명
		본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checked=""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

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²⁾ (서명 또는 인)																														
본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td style="width: 12.5%;"></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 </tr> </table>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첨부4.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접수시 필히 지참)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차인]	
	분양권	예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원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학예정 확인서

각 서

(복학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증명서류 제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대 학 명 :

상기 본인은 20 년 월 현재 휴학 중이나 다음 학기(20 년 월) 복학예정자로서 청년매입임대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공급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각서인 : (인)

경기도시공사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주) 경기도시공사임대주택지원단장 귀하